

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2조중(별표1)의 “충청북도학생도서관”을 삭제한다.

제4조 제1항중 “지방사서관(4급)”을 “지방사서서기관”으로, “지방사서관(5급)”을 “지방사서사무관”으로 “지방사서”를 “지방사서주사”로 한다.

제6조 제2항중 “지방사서관(5급)”을 “지방사서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도서관자료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.

1. 데이터베이스 이용수수료
2. 개인연구실, 회의실 등 이용수수료
3. 자료복사료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액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도서관장이 정한다.

③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④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8조 ①항중 “충청북도중앙도서관과 충청북도학생도서관”을 “충청북도중앙도서관”으로 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관장은 도서관사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다.

1. 도서관 사용자의 입·퇴관 방법 및 절차
2. 도서 및 자료의 열람과 대출에 관한 방법 및 절차
3. 관외로 대출할 수 없는 도서

4. 기타 도서관시설 사용에 필요한 사항
제 16 조중 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1조 (목적) 생략</p> <p>제2조 (명칭 및 위치) 생략 (별표1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도서관명</th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위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충청북도중앙도서관</td> <td>주소생략</td> </tr> <tr> <td>충청북도학생도서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◇</td> </tr> <tr> <td>충주학생도서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◇</td> </tr> <tr> <td>중원도서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◇</td> </tr> <tr> <td>제천도서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◇</td> </tr> <tr> <td>청원도서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◇</td> </tr> <tr> <td>보은도서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◇</td> </tr> <tr> <td>옥천도서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◇</td> </tr> <tr> <td>영동도서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◇</td> </tr> <tr> <td>진천도서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◇</td> </tr> <tr> <td>괴산도서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◇</td> </tr> <tr> <td>음성도서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◇</td> </tr> <tr> <td>단양도서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◇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제3조(업무) 생략</p> <p>제4조 (관장) ① 도서관에는 관장을 두되 충청북도중앙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사서관(4급)으로, 충청북도학생도서관장과 제천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관(5급)으로 보하고, 기타 도서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로 보한다.</p>	도서관명	위치	충청북도중앙도서관	주소생략	충청북도학생도서관	◇	충주학생도서관	◇	중원도서관	◇	제천도서관	◇	청원도서관	◇	보은도서관	◇	옥천도서관	◇	영동도서관	◇	진천도서관	◇	괴산도서관	◇	음성도서관	◇	단양도서관	◇	<p>제1조 (목적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조 (명칭 및 위치) 생략 (별표1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도서관명</th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위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삭제</td> <td>주소생략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삭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삭제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◇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◇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◇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◇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◇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◇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◇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◇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◇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◇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◇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제3조(업무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 (관장) ① ----- ----- 지방사서서기관으로, 제천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하고, ----- -----지방사서주사로-----</p>	도서관명	위치	삭제	주소생략	삭제	삭제	-----	◇	-----	◇	-----	◇	-----	◇	-----	◇	-----	◇	-----	◇	-----	◇	-----	◇	-----	◇	-----	◇
도서관명	위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충청북도중앙도서관	주소생략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충청북도학생도서관	◇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충주학생도서관	◇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중원도서관	◇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천도서관	◇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청원도서관	◇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보은도서관	◇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옥천도서관	◇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영동도서관	◇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진천도서관	◇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괴산도서관	◇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음성도서관	◇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단양도서관	◇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도서관명	위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삭제	주소생략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삭제	삭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----	◇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----	◇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----	◇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----	◇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----	◇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----	◇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----	◇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----	◇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----	◇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----	◇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----	◇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(안)
<p>② 생략</p> <p>제5조 (정원) 생략</p> <p>제6조 (하부조직) ① 생략</p> <p>② <u>서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, 사서과장 및 열람과장은 지방사서관(5급)으로 보한다.</u></p> <p>③ 생략</p> <p>④ 생략</p> <p>⑤ 생략</p> <p>제7조 (사용료) ① <u>도서관자료를 열람하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(별표2)의 구분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어린이(국민학교학생 이하)가 이용하는 경우</u></p> <p>2. <u>관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u></p> <p>3. <u>교육감이 도서관 특수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</u></p> <p>③ <u>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제8조 (휴관일) ① <u>충청북도중앙도서관과 충청북도학생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다음과 같다.</u>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 (정원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 (하부조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지방사서사무관으로 -----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 (사용료) ① <u>도서관자료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u></p> <p>1. <u>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</u></p> <p>2. <u>개인연구실, 회의실 등 이용 수수료</u></p> <p>3. <u>자료복사료</u></p> <p>②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액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도서관장이 정한다.</u></p> <p>③ <u>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<u>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제8조 (휴관일) ① <u>충청북도중앙도서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.</u></p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(안)
<p>1.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</p> <p>2. 매월 17일</p> <p>② 생략</p> <p>③ 생략</p> <p>제9조 생략</p> <p>제10조 (도서관 사용) ① <u>도서관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(별표3)의 입관표를 받아 입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관내에서 도서 및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(별표5)의 관내대출표를 교부받아 소장사항을 기입한 후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관외대출을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(별표5)의 관외대출표를 교부받아 소장사항을 기입한 후 관장이 정하는 절차를 밟아 도서관관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<u>관외로 대출할 수 없는 도서는 관장이 정한다.</u></p> <p>⑤ <u>도서관시설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.</u></p> <p>제11조-제15조 생략</p> <p>제16조(특수시설의 이용) ① 생략</p> <p>② <u>제1항의 연구실등 특수시설의 이용은 유료로 하며, 그 이용료는 교육감이 승인을 얻어 관장이 정한다.</u></p> <p>제17조 (시행규칙) 생략</p>	<p>1. -----</p> <p>2.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 (도서관 사용) <u>관장은 도서관 사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다.</u></p> <p>1. <u>도서관사용자의 입·퇴관 방법 및 절차</u></p> <p>2. <u>도서 및 자료의 열람과 대출에 관한 방법 및 절차</u></p> <p>3. <u>관외로 대출할 수 없는 도서</u></p> <p>4. <u>도서관시설 사용에 필요한 사항</u></p> <p>제11조-제15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6조 (특수시설의 이용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삭제</p> <p>제17조 (시행규칙)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조례는 1992. 1. 1.부터 시행한다.</p>

관계법령(부분)발췌서

○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(대통령령제1302호 1991.5.27)

· 【 별표 1 】

직렬	직류	계 급								
		1 급	2 급	3 급	4 급	5 급	6 급	7 급	8 급	9 급
사서	사서				지방 사서 서기 관	지방 사서 사무 관	지방 사서 주사	지방 사서 주사 보	지방 사서 서기	지방 사서 서기 보

○ 도서관진흥법제29 조(법률제2352호, 1991.3.8) 및 동법시행령30조

- 제29 조(사용료)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. 다만, 공공도서관의 사용료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한다.
- 동법시행령제30 조(공공도서관의 사용료) 법 제29 조의 규정에서 의하여 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 1.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
 2. 개인연구실·회의실등 이용 수수료
 3. 자료 복사료
 4. 장기간 갱습·교육참여에 대한 수수료
 5. 입관료 사립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.
- 부칙제7 조(대통령령제13342호, 1991.4.8)(국·공립공공도서관의 입관료에 관한 경과조치) 국·공립공공도서관의 입관료는 제30 조제5 호의 규정에서 불구하고 1991년 12월 31일까지 이를 받을 수 있다.

○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안 부칙제2항,3항,4항

- 제2항(타기관의 통합)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학생도서관은 학생회관에 흡수 통합한다.
- 제3항(권리의무의 승계) 이 조례시행 당시의 충청북도학생도서관장의 권리의무는 이 조의한 학생회관장이 이를 승계한다.
- 제4항(기관통합에 따른 소속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승계) 이 조례시행 당시의 충청북도도서관의 업무 및 소속공무원은 학생회관 소속공무원으로 본다.